



국정감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7. 10. 30)

한국전파진흥원

1. 교수 경쟁력은 꼭 국적이 '외국'인 교수한테 강의를 받아야만 강화되는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공인인증기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야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 SW인력양성, 중소기업 재직자 더욱 배려해야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이사회는 “서면 이사회”?

국내 교수는 ‘국적’ 이 ‘외국’ 인 교수한테만 강의를 받아야만 경쟁력이 강화된다?

□ 들어가며

- ‘한국전파진흥원’은 최신 이론 및 기술 습득을 바탕으로 IT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IT교수요원 경쟁력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IT교수요원 경쟁력강화사업』은 ‘산·학·연의 분야별 박사급 이상 및 해당 분야의 연구 개발 경험이 10년 이상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발굴 및 추천으로 → 전문가를 선정해 →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 프로젝트 경험, 이력사항, 강의경험, 연구 논문 등을 통해 검증은 거친 후 → 해당 전문가를 초빙해 → 국내에서 국내 IT 관련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는 즉, HW 및 SW 분야에서 우수한 해외 석학을 활용하여 국내 보유한 최신 이론과 기술을 습득케 하는 국내 IT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 문제점 & 질 의

1. 교수 경쟁력은 꼭 국적인 ‘외국’ 인 교수한테 강의를 받아야만 강화되는가?

- 2004년부터 ~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IT교수요원 경쟁력강화사업』으로 개설된 강의는 총 23개 강의로, 이들 강의를 강의한 강사는 총 23명 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23개 강의의 ‘강사의 국적’은 모두가 100% 외국인 즉, 단 한명도 ‘한국 국적’을 가진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표-1 > IT교수요원 경쟁력강화사업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강의 수	6개 강의	7개 강의	10개 강의	23개 강의
강사 수	6명 강사	7명 강사	10명 강사	23명 강사
수강 인원	178명	188명	261명	627명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본 위원은 확인한 결과, ‘산·학·연의 분야별 박사급 이상 및 해당 분야의 연구 개발 경험이 10년 이상의 전문가’의 지문을 통해 강의를 담당할 강사를 발굴 및 추천할 시 ‘국적’이 ‘한국인’인 ‘국내 대학 교수’는 발굴 및 추천이 대상조차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즉 ‘강의를 담당할 강사’가 ‘국적이 한국인인 국내 대학 교수’가 될 경우, 해당 강사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같은 ‘교수 급’인 동료 교수를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는 것이 이들 강의를 수강하는 교수들 정서상 맞지 않아 아예 ‘국적’이 ‘한국인’ 경우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임.
- 그러다 보니 ‘강의를 담당할 강사’ 발굴 및 추천 시, ‘강의를 담당할 강사’를 약 2.5배 ~ 3배 추천 받는데, 한국국적 국내 대학 교수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위원은 이 사업으로 국내에 초빙되어 강의를 담당한 외국 교수는, 자신과 같은 급인 ‘교수’를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 사실 ‘같은 급’이라 할 수 있는 교수를 대상으로 교수가 강의하는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것으로 진흥원은 사업의 의의를 밝히고 있음.
- 국내에서 실력은 있지만 단지 ‘한국인’ 이유라는 하나만으로 ‘국내 대학교수’를 인정 안 하는 그리고 인정 못 받는 교수가 그리고 전문가가 해외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본 위원은 여겨짐.
- ‘같은 급’인 ‘외국 국적인 가진 교수’는 ‘국내 교수’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이 괜찮고, 같은 급인 우리나라 국적인 가진 교수는 실력이 있어도 국내 교수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이 사업임.
- 본 위원은, 자격도 되지 않는데 무조건 국내 대학교수, 연구원에게 이 사업의 강의를 맡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흥원의 정한 조건에 자격이 된다면, 발굴 및 추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온라인 강의 제공

- 이 사업은, 국내 IT 관련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동·하계 방학 중에 강의를 집체교육을 통해 수강할 수도 있지만, 진행된 강좌를 온라인(<http://ttt.aiit.or.kr>)을 통해서도 수강 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총 23개 강의 중 단 10개 강의(43.4%)에 대해서만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을 통해 수강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표-2 > IT교수요원 경쟁력강화사업 현황

구 분	강의 수	수강생 수		비 고
		off-line (집체교육)	on-line	
2004년	6개	178명	×	강의를 동영상으로 찍지 않음
2005년	7개	188명	215명	7개 강의 중 3개 강의만 동영상 찍어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임
2006년	10개	261명	489명	10개 강의 중 7개 강의만 동영상 찍어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임
합 계	23개 강의	627명	704명	교수 : 128건(90%이상이 기수강 교수)
				일반 : 403건(그룹회원, 대학 강의시 수강)
				직원 : 183건(진흥원 직원의 테스트 용)
				∴ 714건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동영상의 이용자는 704명으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본 위원은 그 이유가 진흥원의 계획 미비와 홍보 부족에 기인한다고 여겨지는바, 이에 대한 원장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본 의원이 교육 분야의 통계를 서비스 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에 ‘2007년국정감사자료 제출요구서’를 보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 공학계열 대학 338개교에 재임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14,337명이며 ▲우리나라 공학계열 대학원 354개교에 재임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208명인 바, 대학교와 대학원 중복교원과 공학 분야 중 진흥원이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강의와 연관성이 적은 교원을 제외하더라도, 아직도 많은 교원이 진흥원이 제공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몰라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표-3 〉 우리나라 공과대학·대학원에 재임 중인 교원 현황

구 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합 계
대학 338개교에 재임 중인 교원 현황	6,692명	3,892명	2,670명	1,083명	14,337명
대학원 354개교에 재임 중인 교원 현황	85명	68명	32명	23명	208명
합 계	6,777명	3,960명	2,702명	1,106명	14,545명

* '대학'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방통대,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캠퍼스와 분교도 포함한 숫자임을 밝혀둠. 아울러 '대학원'에는 대학부설대학교, 대학교대학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둠.

(자료출처 : 2007년 한국교육개발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 따라서 본 위원은 강의를 수강한 인사뿐만 아니라 수강하지 않는 인사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진흥원이 홍보 방법과 강의 수강 조건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원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기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야

□ 문제점 & 질 의

-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 시스템과 정보통신망 중에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5가지 지정 기준(①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②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③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④침해사고 발생시의 피해규모 및 범위 ⑤침해사고 발생가능성 또는 복구 용이성)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있음.
- 현재 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 등 10개 부처, 69개 관리기관, 94개 기반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음.
- 그러나 8개 공인인증기관 중 1개 기관(한국무역정보통신)만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위원은 정보통신부 소관인 전자서명법에 의해 매년 안전운영을 위한 정기점검을 받는 기관이니 만큼 그리고 발급 건수가 타 기관에 비해 미미하더라도 침해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감안할 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 바, 협의를 거쳐 지정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 표-1 > 공인인증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현황

기 관 명	발급건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유무
한국정보인증	약 87만 6,000건	2001년 12월, 시설로 지정됨
코스콤	약 331만 8,000건	2002년 9월, 시설로 지정됨
금융결제원	약 1,085만 2,000건	2002년 9월, 시설로 지정됨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약 59만 8,000건	2001년 12월, 시설로 지정됨
한국전자인증	약 13만 7,000건	2004년 12월, 시설로 지정됨
한국무역정보통신	약 7만 8,000건	×
합 계	약 1,586만 1,000건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SW인력양성, 중소기업 재직자 더욱 배려해야

□ 문제점 & 질의

- SW 분야는 시장 및 기술의 변화속도가 빨라 이에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나, 국내 교육만으로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신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함.
- 이러한 '고급 SW 기술 인력 양성'은 원천기술 확보 등과 더불어 SW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요소 중의 하나로, SW의 분석·설계·개발·테스트·유지보수를 담당하는 SW 기술 인력의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SW엔지니어링선도인력양성사업』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하 : KIPA)은 진행해 오고 있음.
- KIPA는 SW 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카네기 멜론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내에 초빙해 교육을 받게 하거나 온라인으로 해당 교육을 수강토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문제점 & 질의

1. 중소기업 재직자 우선 선발??

- 2005년과 2006년 2년 동안 이 사업을 통해 개설된 강의는 총 11회로, ▲2005년, 4회 (on-line 2회, off-line 2회) ▲2006년, 7회(on-line 3회, off-line 4회)인 것으로 나타남.
- 『SW엔지니어링선도인력양성사업』은 사업공고에 '중소기업 및 SW 기업체 재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교육을 받은 교육생을 보면 중소기업 재직자는 정확히 절반 수준(50.1%)인 것으로 나타남.

- 본 위원회는 대기업의 경우 기업 자체에서 교육의 기회가 많이 존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시장 및 기술의 변화 속도에 발 맞춰 나가기 어려운 사정임을 감안 한다면, 좀 더 중소기업 재직자를 배려해 교육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원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표-1 > SW엔지니어링선도인력양성사업 교육생 현황

구 분			선발 현황			
			대	중소	기타	계
2005년	on-line	SA과정(1차)	13	15	1	29
		SA과정(2차)	15	14	2	31
	off-line	EA과정-junior level(1차)	6	13	5	24
		EA과정-junior level(2차)	4	10	3	17
		EA과정-middle level(1차)	-	7	9	16
		EA과정-middle level(2차)	1	5	-	6
2006년	on-line	RE과정	13	12	-	25
		SA과정(1차)	9	15	1	25
		SA과정(2차)	8	12	5	25
	off-line	Intensive workshop과정(1차)	10	11	4	25
		Intensive workshop과정(2차)	9	14	2	25
		Intensive workshop과정(3차)	8	8	9	25
		Intensive workshop과정(4차)	14	16	-	30
합 계	총 11회	110 (36.3%)	152 (50.1%)	41	303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본 위원회는 이 사업이 사업공고 시 ‘중소기업 및 SW 기업체 재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선발된 교육생을 보면 중소기업이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임을 지적한 바 있음.
- 본 위원회는 이 사업을 공고 한 이후 사업에 신청한 인사들의 소속(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등)을 살펴본 결과 대기업에 소속된 인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 사업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는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스러운 바,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단지 온라인 강의 하나만 더 수강할 뿐인데 13만불 지급

- 이 사업은 미국 카네기멜론대학(CMU)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내에 초빙해 교육을 받게 하거나 온라인으로 해당 교육을 수강토록 하고 있음.
- 사업이 진행된 2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강의는 총 11회 진행되었는데, 이때 KISA가 CMU로 강의의 댓가로 지불한 금액은 무려 41만 달러(한화로 약 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 표-2 〉 SW엔지니어링선도인력양성사업 강의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on-line	off-line	on-line	off-line
강의 수	2회	2회	3회	4회
강사 수	2명	2명	3명	4명
KISA → CMU 지불액	US\$13만		US\$13만	US\$15만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즉, ▲2005년의 경우, on-line과 off-line 강의에 대한 댓가로 13만불이 지급된 반면 ▲2006년의 경우, on-line과 off-line 강의에 대한 댓가를 따로따로 해, on-line 강의에 대해서는 13만불, off-line 강의에 대해서는 15만불을 지급 한 것으로 나타남.
- KISA는 2006년에 on-line과정에 'RE과정'이 신설되어 이 과정에 대한 댓가가 13만불이라고 이를 지급한 것이라 밝히고 있음.
- 본 위원은 SW 프로그램의 가격이 어느 선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 그러나 단지 'RE과정'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2005년에 지급된 금액(13만불)의 2배를 넘어서는 금액(28만불)을 2006년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음.
- 시장 및 기술의 변화속도가 빠른 SW분야에, 선진화된 과정을 도입해,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전문 인력의 양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칫 프로그램 공급자의 배만 불려주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위원은 이 사업의 경우, 정부 주도의 SW 인력 양성에서 탈피하여 올해부터는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에 대한 수요를 받아 정부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맞춤형인력양성사업』으로 전환된 것을 알고 있음.
- 본 위원은 SW 기술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과 기술에 있어 열세의 입장에 놓인 중소기업(재직자)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이사회는 “서면 이사회” ?

- 최근 3년(2005~2007)간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총 19회 이사회중 무려 9차례가 “서면 이사회”, 정보보호진흥원은 총 16회중 “서면결의”만 5회
 - ‘임원선임’, ‘정관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중요 안건도 ‘서면’으로 대체
-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정보보호진흥원은 현재 총 9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있음(상임 1명, 비상임, 8명)
 - 이사회는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의 주요사업 내용을 결정하고 및 예·결산을 심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임
 -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정보보호진흥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05~2006) 사이에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총 19회의 이사회중 절반에 가까운 9회를 서면으로 개최했으며(47.4%), 정보보호진흥원은 총 16회의 이사회중 5회(31.3%)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안건을 의결했음
 - 정보통신부 산하 8개 출연기관의 최근 3년간 이사회 현황 개최를 비교하면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이 “‘서면’ 이사회 多개최 부문”의 “금, 은, 동메달”을 차지함

<최근 3년간(2005~2007) 정보통신부 산하 8개 출연기관의 이사회 개최 현황>

구 분	정보사회 진흥원 (NIA)	정보보호 진흥원 (KISA)	소프트웨어 진흥원 (KIPA)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IITA)	정보문화 진흥원 (KADO)	인터넷 진흥원 (NIDA)	전파진흥원 (KORPA)	정보통신 국제협력 진흥원 (KIICA)
이사회 회수	18	16	19	19	15	14	6	3
서면개최 회수	0	5	9	7	2	3	1	1
서면개최 비율	0%	31.3%	47.4%	36.8%	13.3%	21.4%	16.7%	33.3%

※ 출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007.10.22) 재구성

※ 최근 경영평가 오류로 물의를 빚은 정보사회진흥원은 최근 3년간 “서면이사회” 개최가 단 한 건도 없었음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경우, 진흥원 승격후 실무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서면이사회”를 1회 개최했으므로 “서면이사회” 多개최 1~3위 기관들과 사정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음

-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정보보호진흥원이 “서면 이사회” 개최 숫자가 타 산하기관에 비해 많다는 문제 외에도 “서면 이사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임

<최근 3년간(2005~2007)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서면 이사회” 개최 현황>

회 차 (일 자)	안 건	결 과
제20회 (2004.12.30 ~ 2005.1.6)	1. 보수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제21회 (2005.1.27 ~ 1.31)	1. 직제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제23회 (2005.5.16 ~ 5.20)	1. 보수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제24회 (2005.6.20 ~ 6.22)	1. 정관변경(안)	원안의결
제28회 (2006.4.12 ~ 4.17)	1. 정관 변경(안) 2. 직제규정 개정(안) 3.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32회 (2006.11.24 ~ 12.4)	1. 누리꿈스퀘어 운영(임대·분양)방안(안) 2.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 3. 임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제정(안)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제34회 (2007.1.5 ~ 1.9)	1. 해외IT지원센터 사업이관(안) 2. 정관변경(안) 3. 제규정개정(안) 4.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안)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37회 (2007.7.5 ~ 10)	1.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안) 2. 인사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38회 (2007.9.14 ~ 9.19)	1. 직제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 출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007.10.22) 재구성

<최근 3년간(2005~2007) 정보보호진흥원의 “서면 이사회” 개최 현황>

회 차 (일 자)	안 건	결과
제46회 (2005.5.21)	1. 임원 선임(안)	선임
제47회 (2005.10.27)	1. 정관 개정(안) 2. 기관장후보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3.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	원안 원안 원안
제52회 (2006.7.1)	1. 정관 개정(안)	원안
제57회 (2007.4)	1. 정관 개정(안) 2. 기관장후보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폐지(안) 3.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원안 원안 원안 선임
제59회 (2007.9)	1. 직제규정 개정(안) 2. 인사규정 개정(안)	원안 원안

※ 출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007.10.22) 재구성

-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정관변경”, “보수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 “정관개정” 등을, 정보보호진흥원은 “임원선임”, “정관개정”, “기관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및 구성”,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기관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서면으로 원안의결했음

※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임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제정(안)” 1건을 수정의결

- 물론,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정보보호진흥원의 「이사회 운영규정」에 공히 서면개최 및 의결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최근 3년간 이사회 서면 개최의 사유가 이사회 운영규정에 명시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 또는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었는지 서면 개최로 의결한 안건의 내용을 살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 더욱이,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정관」 제15조③에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 제13조①항에는 “서면에 의한 이사회 회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면 개최된 이사회가 “최소한도로 운영”된 것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정보보호진흥원장과 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최근 3년간 개최한 서면 이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 즉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유로 인한 것이었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으로 이사회를 개최해도 기관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사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정부지침을 무비판적으로 승인해주는 “거수기”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아무리 정부의 통제를 받는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 산하기관의 설립취지와 조직운영의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닌가? 정보보호진흥원장이 대표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을 지양하고 이사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사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관장과 소속 임직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보보호진흥원장과 소프트웨어진흥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